G - 110 - 2014

# 폐지 선별 및 압축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4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
- 제·개정 경과
  - 2014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 규격 및 자료
  - HSE, Guidance for the recovered paper industry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(탑승의 제한)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)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(기계의 동력차단장치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4년 11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110 - 2014

# 폐지 선별 및 압축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폐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지의 선별 및 압축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지침을 제공하고, 작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폐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선별 및 압축 시의 작업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압착기"란 판지나 종이 등을 처리·운반 및 저장하기 위해서 원형 또는 각형으로 압축하는데,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기계를 말한다.
- (나) "호거(Hogger)"란 폐기물을 압축기 투입 전에 분쇄할 때 사용되며, 기계 축 혹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축에서 돌출된 암(Arm)시리즈 혹은 블레이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폐지 선별작업

(1) 유해·위험요인

#### G - 110 - 2014

- (가) 선별라인을 따라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폐지와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컨베이어를 따라 반복적인 움직임과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동 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
- (나) 의료 폐기물, 부패된 음식, 해충이나 곤충 등에 의해 오염된 폐기물에 노출되어 건강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뽀족한 주사 바늘 또는 렙토스피라 중 등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
- (다)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에 신체일부가 말릴 위험
- (라) 컨베이어 주변에 방치된 폐지 등에 미끄러지거나, 발을 헛디디거나 떨어 질 위험
- (마) 날카로운 수공구나 유리에 의한 상해 위험
- (바) 건설 및 철거 라인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의 흡입으로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
- (2) 작업 시 주의 사항
- (가)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, 안전작업절차에 대해 모든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(나) 개인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켜 식사, 음주, 흡연, 화장실 가기 전에 손을 철저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(다) 의료용 주사기 등의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 처리 업체에 의해서 안전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(라) 선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고, 착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- (마) 안전작업절차와 안전수칙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, 정 기적으로 개인보호구의 손상 여부를 검사한다. 개인보호구의 교체가 필요

#### G - 110 - 2014

한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.

- (바) 선별라인에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은 방진마 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호흡기 보호구함 을 비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.
- (사) 미끄러지거나,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 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.

#### 5. 압착기(Balers) 작업

- (1) 유해·위험요인
  - (가) 기계의 막힘을 제거하기 위해 압착기 뚜껑과 메인 압착기 램을 폐쇄하는 경우에 끼일 위험
  - (나) 작업자가 압축 장소로의 추락 위험
  - (다) 작업자가 압착기 입구에 접근 시 기계에 의한 절단 위험
  - (라) 압축 장치나 철사 묶음 기계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기계의 외부로부터 압 착기에 접근 시 작동 중인 압착기에 부딪히거나 끼일 위험
  - (마) 압착기 및 압착기 부품에 끼이거나 말릴 위험
- (바)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
- (2) 안전 대책
  - (가) 제어 장치(적합한 비상정지장치 및 기타 제어 장치)는 반드시 선명히 볼수 있고, 적합하게 표시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안전 운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(나) 모든 기계들은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전원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, 시

#### G - 110 - 2014

건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.

- (다) 작업 전에 반드시 기계장치의 전체 조립 상태 혹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부품을 확인해야 한다.
- (라) 안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, 작동 시 안전 제어, 비상정지장치 그리고 제어장치가 모든 관련 장비 기계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마) 작업자는 사람이나 차량이 잠재적인 위험 지역으로 들어올 때 발생 가능한 위험성, 재료 블록(폐지 묶음)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, 비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(바) 작업자가 조작하는 조작반 주변에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 방호울을 설치 하여 이동 중인 차량과의 부딪힘을 예방해야 한다.

#### 5.1 비상정지장치

컨베이어 및 포장기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사람들이 작업하는 장소 그리고 컨베이어 구동부 등과 같이 말릴 수 있는 장소의 주변에 설치해야 한 다.

#### 5.2 비상정지버튼

- (1) 작업지역에서 작업자나 주변 작업자가 신속하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해야 한다.
- (2) 비상정지버튼은 눌러서 작동하고, 돌려서 복귀되는 형식의 버튼을 사용해야 한다.
- (3) 비상정지버튼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.

#### 5.3 감지 시스템

#### G - 110 - 2014

- (1) 작업자를 감지하는 시스템은 신호 송신기를 착용한 작업자가 확인되고, 감지기가 몸의 열을 인식하는 경우 장비를 정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2) 이러한 소프트웨어 장치는 단지 추가적인 보호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며, 이 장치들이 비상정지장치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## 5.4 물림점에 대한 방호

- (1) 고정식 또는 인터록 가드를 사용하여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.
- (2) 출입문이 설치된 컨베이어에 정렬/비틀림과 같이 기계적인 조절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정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장소에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.
- (3) 인터록 장치는 전기 스위치 형태와 기계적 '트랩키'형식(잠금장치를 열쇠로 돌려서 열거나 잠그는 형식)의 유형 중 적합한 형태의 인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.

#### 5.5 컨베이어

- (1) 유해·위험요인
  - (가)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위험
  - (나)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
  - (다) 컨베이어의 구동부에 끼임/말림 위험
- (라) 컨베이어 위를 걸어다니는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위험
- (2) 작업 시 주의 사항

#### G - 110 - 2014

- (가)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공급 또는 포장 작업을 할 때에는 경사진 컨베이어 상단에 의도적으로 직접 접근하는 작업자를 통제해야 한다.
- (나) 작동 중인 컨베이어에 접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. 컨베이어 및 압착기는 반드시 격리하고, 시건조치를 취해야 하며, 경사진 컨베이어를 걸어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건널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해야 한다.
- (다) 정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장소에는 방호울을 설치하고, 출입용 문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- (라) 일부 컨베이어는 홀드투런(Hold-to-run)이 가능하거나 또는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. 이 장치들은 반드시 제조업체 및 작업계획에 따라 허가 받은 유지·보수 기술자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및 유지·보수되어야 한다.
- (마) 일부 급격하게 경사진 컨베이어 공급 압착기는 단층 피트(화물 자동차 또는 스키드 로더에 의해 적재되는 형식)를 가지고 있다. 피트로 추락하 거나 차량이 철골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 야 하다.
- (바) 작업자들이 인력으로 컨베이어에 소재 등을 공급하는 경우, 모서리에 부 딪히지 않도록 고정식 또는 이동식 모서리 보호대를 제공해야 한다.
- (사) 위치 이동 중 피트로 미끄러지는 작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표시 및 특수 바닥재를 설치 및 부착해야 한다.

#### 5.6 호퍼(Hoppers)

#### (1) 유해·위험요인

(가) 호퍼나 관에 폐기물을 투입하는 컨베이어 상단 이동통로 및 작업발판에 서 떨어질 위험

#### G - 110 - 2014

- (나) 호퍼 청소나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압축되거나 호퍼 내부로 떨어질 위험
- (2) 작업 시 주의 사항
- (가) 시야 확보를 위해 호퍼 측면으로 접근하거나,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호 퍼의 상부로 접근할 수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.
- (나) 호퍼 또는 압착기 덮개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. 승강구는 위험한 부분 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다)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, 적절 한 추락방지(Fall-arrest)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.
- (라) 랜야드(Lanyard)의 추락거리는 압착기 내부로의 떨어짐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짧아야 한다.
- (마)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하고, 호퍼 자체에 올라갈 필요 없이, 안전한 장소에서 이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(바) 불필요한 발판을 제거하고,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적인 안 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.
- (사) 작업장 사업주는 안전 시스템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. 호퍼, 압착기 덮개, 램으로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된 작업절차에 따라야 하 고, 작업절차에 대해 작업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.

#### 5.7 분배기

- (1) 유해·위험요인
- (가) 분배기는 압축된 폐기물(폐지)을 부수는 압착기 위의 호퍼로 이동할 수 있다. 분배기는 슬라이딩 도어 또는 힌지 도어를 통해 호퍼로 이동된다. (종종 사람이 압축기 내부로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

G - 110 - 2014

다)

- (나) 분배기의 회전하는 절단 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적재물을 균등하게 만들고 빈 공간을 최소화시킨다. 회전하는 절단 날과의 접촉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다.
- (2) 작업 시 주의 사항
  - (가) 분배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.
    - ① 공급용 호퍼 내부에 있고 접근용 문이 폐쇄 될 때만 작동할 수 있다.
    - ② 분배기 절단 날의 회전이 중지할 때까지 이동할 수 없다.
  - (나) 만약 호퍼의 안팎으로 분배기 이동을 위한 출입문이 작업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경우에는 출입문에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
#### 5.8 호거(Hogger)

- (1) 유해·위험요인
- (가) 회전하는 암(Arm) 작동 시 소음 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
- (나) 회전하는 암에 접근 시 절단, 끼임 및 부딪힐 위험
- (2) 작업 시 주의 사항
- (가) 방호울을 설치하여 접근을 통제하거나 기계를 격리시켜야 한다. 그리고 유지·보수 작업을 위해 방호울을 제거할 때 설비의 작동이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
## 5.9 포장작업

(1) 유해·위험요인

#### G - 110 - 2014

- (가) 유압 램 또는 전기 구동 모터에 의해 형성된 절단 물림점에 말릴 위험
- (나) 회전축 및 맞물림 기어에 말릴 위험
- (다) 바늘뿐만 아니라 와이어가 엉킬 위험
- (라) 램(Ram)의 위험. 작업자들이 단선된 와이어와 램의 바늘구멍으로부터 파편을 제거하는 작업 시 램이 뒤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체일부의 절단 위험
- (2) 작업 시 주의 사항
- (가) 가드가 램의 전체 경로와 바늘구멍을 포함한 바늘 스트로크를 덮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.
- (나) 항상 와이어를 형성시키는 조립체를 둘러싸고 있는 고정 인터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.
- (다) 기계를 방전시키는 경우 운영자가 위험 부분에 도달하여 중지시킬 수 있 도록 터널 가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#### 5.10 막힘 제거 작업

(1) 유해·위험요인

막힘 제거 작업은 폐지 재활용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이다.

- (가) 막힘 제거 작업 중 압착기의 구동부나 움직이는 부품에 끼일 위험
- (나) 호퍼 등의 높은 곳에서 막힘 제거 작업 시 호퍼 내부로 떨어지거나 바닥 으로 떨어질 위험
- (2) 작업 시 주의 사항

#### G - 110 - 2014

- (가) 압축하는 동안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막히지 않는 재질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작업이 완료된 묶음의 무게와 크기를 표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.
- (나)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컨베이어에 항상 균일하게 재료들을 투입해 야 한다.

## 6. 교육과 감독

#### 6.1 근로자 교육

- (1)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(가) 안전방호장치 점검에 관한 사항
  - (나) 작업 시 문제점에 대한 보고 체계
  - (다) 사용 중인 기계설비의 위험성
  - (라) 기계 청소 작업 시 안전작업절차
  - (마) 비상상황 시 대처 사항, 화재 및 응급상황 시 조치

## 6.2 인력작업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

#### (1) 유해·위험요인

- (가) 장시간 동안 폐지, 이물질 선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
- (나) 들어올리는 자세와 몸을 비트는 자세는 등과 허리에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

#### G - 110 - 2014

- (2) 작업 시 주의 사항
  - (가) 가능한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피한다.
  - (나) 장시간의 반복적인 동작,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기 위해 순환 업무를 실시한다.
  - (다) 순환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휴식을 자주 취하게 하여 신체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.
  - (라) 인력작업 대신 기계·기구의 사용이 가능한 작업이면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. 예를 들어, 테이블 트럭(Table truck)과 이동식 릴의 사용, 적재물이 큰 경우에는 기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.
  - (마) 근로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자세, 동작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.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.
    - ① 부적절한 작업 자세
    - ② 엉거주춤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자세
    - ③ 과도한 힘의 사용
    - ④ 신체의 반복적인 동작
    - ⑤ 어려운 수작업
    - ⑥ 허리를 자주 구부리거나, 비트는 작업

#### 6.3 안전작업절차

(1) 안전작업절차 교육을 위해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## G - 110 - 2014

- (가) 작업공정 및 관련 작업자 작업 사항
- (나) 필요한 안전방호장치의 종류
- (다) 교육, 지도, 감독에 관한 사항
- (라) 파악된 위험에 대한 상세 내용과 작업을 완료하기 전까지의 올바른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
- (2) 안전작업절차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.
- (가) 안전작업을 위한 지침서
- (나) 장비 사용 시 위험한 장소에 비치해야하는 위험 경고 표지
- (다)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사항